

좋은 일자리와 협동조합

엑투스 협동조합 이사장

최예준 2014.3.19

좋은 일자리와 협동조합을 주제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여기 협동조합에 관심있어 오신분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 먼저 제가 몸담고 있는 엑투스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해 조금 소개를 드리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0. 엑투스 협동조합 소개

엑투스 협동조합은 정보통신(IT) 컨설팅/서비스를 7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직원 12명에 매출액은 8억정도 였다. 2014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일반기업과 협동조합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영역의 고객/조합원 참여 혁신 서비스인 “지식 칵테일”을 준비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휘된 이후 직장의 동료들과 같이 1년간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준비하였고 2013년에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전환을 준비하면서 협동조합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협동조합 보드게임도 만들어 보았고,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 “레츠쿱”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였다.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즐거운 자료이니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가 좋은 일자리로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논의해 보고 싶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 가능한 협동조합 정책에 대해 협동조합 작업공간을 중심으로 제안하겠다.

1. 노동자협동조합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조합원에 제공하는 것.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동자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엑투스협동조합은 정보통신업을 하는 사람들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기본법상에는 직원협동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을 하자면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CICOPA)의 노동자협동조합 선언에는 노동자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노동자협동조합은 1)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2)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를 생산하는 것, 3)인간노동을 품위있게 하는 것, 4)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자가경영을 가능케하고 5)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의 노동과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멤버십은 작업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3.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노동은 조합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노동자협동조합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조합원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4. 노동자조합원과 그들의 협동조합과의 관계는 전통적인 임금노동, 그리고 자영노동과 달라야 한다.
5. 노동자협동조합의 내부규정은 노동자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동의되고, 받아들여지는 체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6.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관계와 경영,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 및 제 3 자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좋은 일자리는 스스로 개선 가능한 작업장(자리)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같이 일하는 작업장내에서 위에서 말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성격들이 구현되어야 한다.

한국의 기재부의 2013년 협동조합 통계를 보면 기본법상에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그 출자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업장보다는 사업아이템에 촛점을 맞추어 생산, 마케팅 또는 영업에 투자하게 된 것 같다.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의 초기에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장에서 공동의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상품/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사업의 지속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업초기 사업장을 가지는 것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2. 협동조합 지원정책 창의적인 협동이 가능한 공간지원에 촛점을 맞춰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센터 내에 다양한 사회적 기업, NGO, NPO 가 모여 있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 듯이 협동조합간에도 그러한 효과를 창출 해야 한다.

사업환경에서는 사업이 계속됨에 따라 신생 협동조합들은 해내야 할 과업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온다. 이때 가장 쉽게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먼저 경험한 협동조합들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 지려면 연혁이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같은 공간에서 협동을 해가는 방식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장기의 협동조합과 신생 협동조합들이 같은 공간 내에 공존하고 서로에게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는 방식의 공간사업이 필요하다.

3. 사업의 경험이 있는 협동조합이 신생협동조합과 협동을 자극하는 공간 구성되어야

기존의 사회적기업 공간지원사업을 보면 신생 사회적기업들이 공간을 공유하고 그 신생기업들간에 교류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신생기업들만으로 구성되어 업력이 있는 기업들의 경험이나 사업의 교류는 공간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보다는 동일성(동일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점에서 사업의 거래가 더 쉽게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다. 동일 공간에서 그러한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신생협동조합과 성장기 협동조합의 성장에 서로서로 도움이 될 것이다.

4. 강남 3 구에 협동조합 혁신공간 시범 운영으로 공간사업의 타당성 검증 제안한다

국내에 협동조합 공동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고 현재 협동조합들이 사업공간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자본의 투자를 공간사업에 촍점을 맞추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의 초기 모델을 서울시에서 가장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된 강남 3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발굴 육성하고 이를 서울의 전 구로 확산하는 것을 제안 드린다. 이러한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사례를 만들어볼 생각이다.

5. 협동조합 공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스스로 공통의 적용 규칙을 제정해야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없는 협동조합의 공간운영은 공유지의 비극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공통의 사업에는 아무도 참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협동조합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위한 자신들의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타 협동조합과 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한다. 그리고 서로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가능하기 위한 공통의 학습을 이수하도록 해서 협력에 필요한 기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